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제정 2007. 3. 7 규정 제10호
일부개정 2013. 1. 31 규정 제9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 이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단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업무 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 이 곤란할 때에는 그 실제 경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시 공단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비일수의 계산) 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 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포함한다.

제6조(출장지의 구분) ① 출장지는 양주시 지역을 관내 출장지로, 기타의 지 역을 관외출장지로 구분한다.

②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와 공단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 31>

③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정산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1. 31>

제7조(장기체재 여비) 출장자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 및 숙박료는 그 지역에 도착한 익일부터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1.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
2.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3.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

제8조(여비의 정액) ① 국내 여행 시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수로여행 기간 중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④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비정액 중 운임,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 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국외여비) 국외여행시 국가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 을 참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99호, 2013. 1.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 1. 31〉

국내여비지급표

공무원 여비규정	임·직원 국내여비규정
제 1 호	이사장
제 2 호	4 ~ 8급

등 급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20,000	30,000	2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